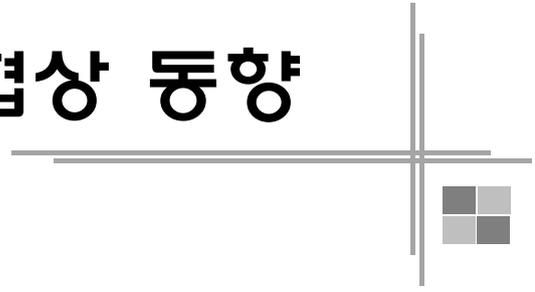


W T O 전문가 풀  
조찬간담회(12.11.2)

# WTO/DDA 협상 동향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협력과  
김진진 과장



- '01.11월 UR 협상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 가속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 채택
- '02년부터 본격적 협상이 진행되어, 농산물·비농산물(NAMA)·서비스·규범·환경·지재권·분쟁·무역원활화·개발 분야 등에 협상그룹 설치
  -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ties)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
- '03.9월 칸쿤 각료회의 및 '04.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를 거쳐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타결, '07년 제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작업 진행
- '09.12월 제네바 각료회의 시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
  - '11.5월부터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 구성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미도출
    - \* 소규모 패키지 : 최빈개도국(LDC) 의제 + 수출경쟁, 수산보조금 등
- '11.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

○ 무역원활화 등 합의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조기수확, 분야별·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협상 진전방안 모색 중

- \* RGF(Really Good Friends) 국가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12.10.2~3. 실무급회의에서 협정의 구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2차례 회의를 통해 협정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 도출 계획
- RGF :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 2 | 향후 협상전망

□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의 낮은 협상타결 의지, 주요국 정치일정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DDA 협상 진전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기 합의 가능 분야, 일괄타결 원칙 유지 등에 국가간 이견

- 회원국간 의견교환 및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심포지엄, 비공식 세미나\* 등 추진 계획

\* 식량안보, 글로벌 가치사슬, 농업교역 관련 국제기준, 수산보조금 등

□ FTA 등 양자간 무역협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DDA 협상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반면, 양자간 교역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WTO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

○ 위원회의 이행점검, 일반 통상 이슈(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 대응, FTA협정 해석 등) 중심으로 WTO 통상 관련 기능 강화

□ 내년 주요국 대선이후 DDA협상 본격 진전 또는 식량안보, 글로벌 가치사슬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새로운 round의 논의가 대두 가능성

## 가 협상의 기본골격

◆ UR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접근확대, 국내보조 감축 및 수출보조 감축 등 논의

□ (시장접근) 구간대를 정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 논의

\* 다만,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의 관세감축의 예외 인정

□ (국내보조)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감축

\*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큰 폭으로 감축하고, 보조금 규제 강화

□ (수출보조) 수출보조금 폐지,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허용

## 나 협상 진행동향

□ '08.12월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기초로 협상 진행 중

\* '07.7월 초안, '08.2월 1차 수정안, '08.5월 2차 수정안, '08.7월 3차 수정안

□ '10.12월~'11.4월까지 실무·고위급 회의를 통해 잔여쟁점 논의를 지속하고, 각 그룹별·양자협의 등 진행

□ '11.4월 세부원칙 잔여쟁점별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 대신 농업의장 보고서가 발표 되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미제시

□ '11.5월부터 제기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 선정 논의는 주요국간 입장 대립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함

□ 제8차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를 반영, 향후 농업협상을 포함한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논의 개시

○ 무역원활화, TRQ 관리, 국영무역, 수출경쟁 등 농업분야 조기수확 이슈 논의 중

- 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무역원활화만의 조기수확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G20(수출개도국) 그룹은 TRQ 관리·수출 경쟁·식량원조·국영무역·면화 등 이슈의 포함을 주장

\* 브라질 등 G20국가를 중심으로 WTO 사무국에 수출경쟁과 TRQ관리 관련 추가 연구와 업데이트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Non-paper를 회람

○ 식량안보, 글로벌 가치사슬 등 이슈에 대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간 논의 촉진 유도

\* '12.10월 현재 호주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과 함께, 식량안보 관련 심포지엄 개최방안 등 논의 중

- 호주 등은 심포지엄을 통해 농업협상 주요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농업협상 재개, 시장개방 논의 유도 등 목적

- 우리는 무역적 측면 뿐 아니라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개도국 역량개발, 국제적·국가별 비축제도, 생산기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에 대응 필요

## 다 주요 쟁점

### ◆ 10개 쟁점(시장접근 분야 8, 국내보조 분야 2)\* 중심으로 논의

\* ①관세상한 ②특별품목 ③민감품목 ④개도국 특별긴급관세 ⑤관세단순화  
⑥TRQ 신설 ⑦열대작물 ⑧특혜잠식 ⑨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면화

-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특별품목,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긴급 관세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대응

#### □ 관세상한(Tariff Cap)

: 공식에 따른 관세감축 결과, 100%(개도국은 150%)를 관세상한으로 적용 (단 특별·민감품목은 예외)

○ 수입국그룹은 일반품목도 일부 관세상한 적용의 예외를 주장하나,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하거나 추가 TRQ 증량 주장

#### □ 특별품목(Special Product)

: 일반품목보다 관세감축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 허용

○ 지정 가능 품목수(전체 세번의 12%), 감축 면제 품목수 (5%) 등의 수치에 대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 대립

####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 일반품목보다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관세감축 이행기간 단축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품목

○ 일부 국가는 민감품목 수 추가를 주장,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

####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시 또는 수입가격 급락 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도국만 허용)

○ 개도국그룹은 발동 기준을 낮추고 구제조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출국은 동 조치 남용을 우려하여 반대

□ FTA 체결 등 대외협상환경 변화를 감안, DDA 협상 세부 원칙에 대한 주요 쟁점별 대응방안 검토

○ 관세상한·특별품목·민감품목 등 우리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에 적극 대응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 강화를 통한 협상력 제고

\* G33 : 특별품목, SSM 공조 개도국그룹(우리나라, 중국, 인도, 필리핀, 등 46개국)

\* G10 : 농산물 수입국그룹(우리나라,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등 9개국)

□ WTO 농업위원회 통보의무 이행 강화 및 국내 정책의 국제 규범 합치성 제고 노력

○ 잔여 미통보 사항\*의 단계적 통보 추진, 수시통보 대상(SSG 발동기준·신규 허용보조) 관련 즉각적 자료 입수체계 마련 등 통보의무 이행 강화

\* 국내보조('09~'11) 및 수출보조('09~'11), TRQ 이행실적('10~'11)

○ 신규 예산사업·법률 등 수립 시 WTO 규정의 합치성 여부 사전 검토, WTO 무역정책검토(TPRM, 9.19~21)시 회원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

## 가 협상경과

- DDA 규범협상에서 '03년 수산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다른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후 논의 활성화
- '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결정, '07.11월 규범의장이 어선건조,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정문안 발표
  - \* '11년 수산보조금 1.38조원 중 금지대상 보조금은 약 1.05조원으로 보조금 금지가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 '10.9월 우리나라는 면세유, 어항시설 보조금 등이 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서 제출
  - 운영비(면세유 등)를 금지대상이 아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 자원관리를 잘못할 경우 지급을 사후정지, 영세 소규모 어업인에 대하여는 선개도국 공히 보조금 허용 등
- 라미 사무총장이 '11.4월까지 새로운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규범의장이 수정 협정문안 대신 현황보고서 제출('11.4.21)
- '11.5월 연내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에 수산보조금 포함 (미국 등 주장)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큰 진전사항 없음
  - '11.7월 소규모 패키지 도출이 어려워지고 각 협상그룹별 협상을 계속하도록 함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상도 규범 의장 주제로 전개될 전망
    - \* 수산보조금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는 주요국 초청 심포지엄 개최 계획

## 나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 □ 협정의 적용범위

-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 금지보조금의 범위

- '07년 규범의장 협정문안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금지로 분류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조 ⑥소득 보조  
⑦입어료 ⑧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 미국·호주·뉴질랜드·칠레 등 FFG(Fish Friends Group) : 의장안 지지
- \* 개도국 : 의장안을 지지하면서도 개도국 대우 확대 주장
- \* 우리나라·일본·대만·EU·캐나다 공조그룹 : 금지범위를 대폭 축소 주장

### □ 유류보조금

- 가장 논란이 많고 금지의견이 대세이나, 관련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 \* 일본은 '11. 1월 유류보조금을 금지하는 제안서 제출

### □ 소규모 어업

-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선·개도국 모두에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

## □ 공해어업

- (개도국) 공해어업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해어업 후발국에게 공평하지 않으므로 허용 요구
- (FFG 및 원양어업 선발국) 공해자원이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

- (우리나라 · 일본 · 대만 등)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 (FFG) 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나, 과잉어획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	향후 대응방향
---	---------

## □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입장 유사국과의 공조하에 대응

- 일본 · EU 등 공조국 및 미국 ·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제안서에 대한 지지 확보

## □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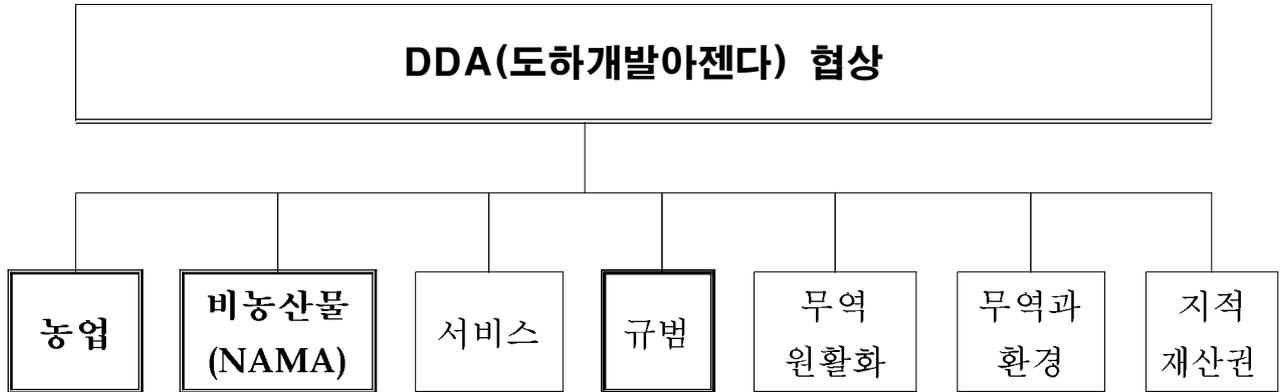
## UR/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3.2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2008.5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2차 수정안 제시) 2008.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3차 수정안 제시) 2008.1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4차 수정안 제시)
미·EU 합의 (블레이하우스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 참고 2

## 각 협상별 주요 내용



협상	분야	쟁점	현황
농업	시장접근	• 관세 감축	(협상 진행중)
	국내보조	• 국내 보조금 감축	(협상 진행중)
	수출경쟁	• 수출 보조금 감축	
NAMA	관세감축방식		합의
	분야별 무세화	• 자발적참여 전제여부	(협상 진행중)
규범	수산보조금	• 금지보조금의 범위	(협상 진행중)

# 참고 3

# 농업 협상 세부원칙 잔여쟁점 논의 내용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TRQ 신설	○ 신설불가/[가능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 G-10 : 도입 필요 ○ 수출국 : 기본 반대입장, 필요 시 충분한 보상 필요
특별품목	○ Entitlement : 12%, Zero cut : 5% ○ 평균감축률 : 11%	○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 인니 : SP 수치는 각료간 결정 필요 ○ 미국 : 수용불가 ○ 수출 개도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민감품목	○ 개수 : 4%+2%(EFTA 및 일본) ○ TRQ 증량: 소비량의 4%	○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 수출국 : 4%(품목 추가 시 보상 수준을 높일 필요)
SSM	○ UR 양허관세 초과: 제한 인정(W7) - 120-140 : 33%, 8%P -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 G-33 : W7의 제 조건 수용불가 ○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필요 -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 브라질 : Normal trade 및 Import surge에 중점 ○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관세상한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4 및 W/6기초로 논의 가능 ○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관세 단순화	○ 목표 : 100% 단순화/[90%] ○ 방식 : Annex N 적용	○ G-10/EU : 90%, 85% 주장 ○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 EU : Rev.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Blue Box상한	○ 미국 : '95-'00년 BB 지급액에 기초 '02년 농업법 품목별 지급 비율의 [110% or 120%]	○ 미국 : 정치적 이슈로 인식 ○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 브라질 : 105%
면화	○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 BB : 일반의 1/3 설정	○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 Cotton 4 : 신속 해결 ○ G-20 : Cotton 4 지지
열대작물/ 특혜잠식	○ 열대작물 : 열대작물 list의 65% - 20%이하 : 철폐 - 20% 이상 : 80% 감축 ○ Annex H 품목은 개도국관세 감축기간(10년) 적용	○ 인도 : 동 내용 논의 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재협상 곤란

## 참고 4

## 농업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

### 시장접근분야

#### 가. 관세감축률

-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률을 적용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0 < 양허관세 ≤ 30%	33.3%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0 < 양허관세 ≤ 80%	38.0%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80 < 양허관세 ≤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6단계), 개도국 10년(11단계)
- 평균감축률 설정 : 선진국은 최소 평균감축률 54%를 적용하고 개도국은 최대 평균감축률 36%를 적용

#### 나. 민감품목

- 일부를 민감품목으로 지정, 일반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관세세번의 4%(개도국은 5.3%)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률을 구간별 감축률의 1/2~2/3를 적용하되, TRQ를 소비량의 3~4%(개도국은 2~2.7%) 증량해야 함
  - TRQ증량은 3년 동안 증량(단, 이행첫해 1/2만큼 증량)

○ 단, 개도국은 TRQ 증량 외 이행기간 조정 옵션 선택 가능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선진국	전체 세번의 4%	<p>▶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증량 (소비량대비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관세 감축</th> <th rowspan="2">원칙</th> <th colspan="2">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th> </tr> <tr> <th>10%이상</th> <th>3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 <td>3.0%</td> <td rowspan="3">0.5% 감소</td> <td rowspan="3">1% 감소</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 <td>3.5%</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 <td>4.0%</td> </tr> </tbody> </table>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0%	0.5% 감소	1%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3.5%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4.0%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0%	0.5% 감소	1%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3.5%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4.0%																											
개도국	전체 세번의 5.3%	<p>▶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소비량대비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관세 감축</th> <th rowspan="2">원칙</th> <th colspan="2">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th> </tr> <tr> <th>10%이상</th> <th>3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 <td>2.0%</td> <td rowspan="3">0.3% 감소</td> <td rowspan="3">0.7% 감소</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 <td>2.3%</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 <td>2.7%</td> </tr> </tbody> </table> <p>▶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이행기간을 단축                      ※ 단, 3가지 옵션 중 한가지 선택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세 감축</th> <th>이행기간</th> <th>비고(적용범위 한정)</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 <td>3년</td> <td>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 <td>2년</td> <td>1/3로 한정</td> </tr> <tr> <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 <td>1년</td> <td>1/4로 한정</td> </tr> </tbody> </table> <p>▶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일반감축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3년 연장</p>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2.0%	0.3% 감소	0.7%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3%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2.7%	관세 감축	이행기간	비고(적용범위 한정)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년	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년	1/3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1년	1/4로 한정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2.0%	0.3% 감소	0.7%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3%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2.7%																											
관세 감축	이행기간	비고(적용범위 한정)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년	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년	1/3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1년	1/4로 한정																										

□ 현행 비TRQ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시 TRQ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잔여쟁점으로 남아있음

- ◆ 의장은 TRQ 신설 불가/가능 옵션을 모두 제시하면서, 최근 논의내용을 기초로 의장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별도문서로 제시(TN/AG/W/6 '08.12.6.)
  - 신설 가능범위 : 전체 세번의 1% 범위 내에서 신설 허용
  - TRQ증량수준 : 일반적인 민감품목보다 소비량의 2% 추가 증량 (TRQ신설로 기존 교역 저해시, 기존교역량에 소비량 추가)
  - 신설 TRQ의 세번과 물량을 세부원칙에 첨부하여 투명성 확보
  - 신설 TRQ의 쿼터내 세율은 0%, MFN 방식으로 운영

### 다.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 관련 지표를 기초로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전체 세번의 12%	▶ 전체 특별품목의 평균 감축률이 11%가 되도록 함 (단, 전체 세번의 5%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면제 인정)

### 라. 관세상한

- 관세상한(capping)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관세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 큰 부담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 적용의 예외를 인정(단, 보상 규정)

	선진국	개도국
상한수치	100%	150%
적용제외	▶ 민감품목 - 단, TRQ 추가 증량(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 대한 상한 적용 제외문제가 진여쟁점으로 논의 중이나, 우리나라는 해당 X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스랜드에 한정)	▶ 민감품목 - 단, TRQ 추가증량(0.33%) ▶ 특별품목 -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마.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발동가능 품목수,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제한없음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 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SSM발동을 제한
- UR 양허관세 초과 SSM 관련 품목수,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등이 잔여쟁점으로 남아있음

◆ 의장은 잔여쟁점에 대한 의견을 별도문서로 제시(TN/AG/W/7 '08.12.6.)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전체 세번의 2.5%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140%이하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140% 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은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 발동을 제한

## 바. 관세단순화

- 관세 형태의 복잡성이 관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따라 관세 단순화가 논의됨
- 전체 세번을 단순 종가세로 양허하는 안과 최소한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양허하는 방안이 병렬적으로 제시
- 전환시 AVEs 전환방식('99~'01년기준)을 이용하되, AVEs가 최근년도 수입단가를 기초로 산출된 Current AVEs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전환
- 개도국은 2년의 이행기간 부여

## 사. 열대작물(Rev.4 新 147, 148항\*)

\* EU,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ACP, 미국 등이 바나나 분쟁 타협안 (09.12.15)의 일환으로 열대작물 및 특혜잠식에 대해 합의, Rev.4 관련 조항(147, 148)에 대한 수정을 요청(09.12.18)

\*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선진국은 Annex G(케언즈 List, UR List)에 나열된 품목 65% 이상에 대해 열대작물 방식(tropical treatment)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

○ 현 양허관세(종가세 혹은 종가세상당치)가 20% 이하이면 관세를 철폐하고, 20%를 초과하면 80%를 감축

○ 특혜잠식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5년간 6번 감축

○ 개도국은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경우 Annex G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권고

## 아. 특혜잠식(Rev.4 新 149항\*)

\* EU 등이 바나나 분쟁 타결로 특혜잠식 조항의 수정 요청('09.12.18)

Annex H 나열품목은 개도국 관세감축 이행 기간(10년) 적용

Annex H 품목 중 미국/EU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의 특혜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2003~2005년 기준)의 10% 이상일 경우 out-quota 관세감축과 신규 TRQ 물량 설정을 7년에 걸쳐 이행

# 국내보조분야

## < 보조금의 체계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 허용보조 (Green Box: GB)
② 감축대상보조 (AMS)	③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④ 블루박스 (Blue Box: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 한도+최소허용보조 한도+ 블루박스 한도)을 추가적으로 감축

\* 각각 개별 보조한도를 감축하면서 합계인 OTDS도 감축하도록 규정

### < 감축구간/ 감축률/ 이행기간 >

감축구간(해당국가)	OTDS규모	감축률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억달러 초과	80%	첫날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6.7%
2구간(미국, 일본)	100억~600억달러	70%		
3구간(기타 국가)	100억달러 미만	55%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첫날 20% 감축,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 나.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 현행 총 AMS한도를 감축

감축구간(해당국가)	AMS규모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억달러 초과	70%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30%(선진국의 2/3)
2구간(미국,일본)	150억~400억달러	60%		-첫날 3.3% 감축, 나머지는 8년간
3구간(기타국가)	150억달러 미만	45%	첫날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균등 감축

### ○ 품목특정 AMS 한도 설정(이행첫날부터 적용)

- 기본적으로 과거 지급실적을 한도로 하나 일부 예외적 규정 설정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00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 지급실적</li> <li>▶ 기준기간('95-'00년) 이후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 있는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통보된 평균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i)</li> <li>▶ 기준기간 동안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로 지원한 품목의 경우는 UR 결과의 DM 수준(선진국: 품목 생산액의 5%) (ii)</li> </ul>
개도국 (3개 옵션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 지급액 - 단, 선진국의 (i), (ii)(품목생산액의 10%)도 함께 적용</li> <li>▶ (b)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생산액의 20%</li> <li>▶ (c) 해당년도(in the relevant year) 총 AMS의 20%</li> </ul>

##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선진국	▶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5%)을 50% 감축(생산액의 2.5%)하되, 이행 첫날에 감축 이행
개도국	▶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10%)을 33.3% 감축(생산액의 6.7%)하되, 3년동안 감축

## 라. 블루박스(Blue Box)

(Old BB)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 (i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 이하이거나,(or)
- (i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진다.

(New BB)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비생산시에도 지불)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 (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고,(and)
- (iii) 이러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이하에 대해 이루어진다.

### ○ 블루박스 총 한도 및 품목별 상한

- UR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블루박스 총 한도를 새로이 설정하면서, 품목별 상한도 설정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블루박스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이행첫날부터 적용)</li> </ul> </li> <li>▶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00년에 지급된 블루박스 보조금의 평균</li> <li>-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5%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는 블루박스 상한의 2.5%를 상한으로 설정</li> </ul> </li> </ul>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블루박스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이행첫날부터 적용)</li> </ul> </li> <li>▶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 블루박스 상한의 10%를 상한으로 설정</li> </ul> </li> </ul>

※ 단, 품목특정 AMS상한을 블루박스로 전환시, 품목별 BB한도는 상기 상한을 초과 가능(전환된 AMS상한만큼 BB상한 추가, 전체 BB한도는 유지) 하나,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

※ 한편,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BB로 전환 가능(우리나라 해당 조항)

## 마. 허용보조(Green Box)

### ① 정부 서비스-일반서비스

- 현재 농업협정문 일반서비스 항목(7개)에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항목 추가

###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를 도울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 포함하지 않음
  - \* 현행 규정은 관리가격(구매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를 AMS로 산입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로부터 보조된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거나 식량 구호 제공시에는 구매가격과 외부 참고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하지 않음

### ③ 비연계소득보조

- 수혜자격은 고정불변기간(fixed and unchanging) 내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되, 기준기간의 예외적인 변경 인정
  - \* 기준기간의 예외적 변경요건으로는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규정
  - \* (구체적 변경 요건) ㉠ 변경기간은 상당히 긴 과거연도, ㉡ 수확량이나 지급 단가 증가와 비연계, ㉢ 국내보조 관련 의무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④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

-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관련 허용보조조건을 완화
  - \* 손실이 과거 5개년 평균 생산액 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 이하인 경우도 지급 가능

\* 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및 작물·동물의 폐기 등 다양한 재해 관련 보조 규정 신설

### ⑤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⑥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수출경쟁분야

###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 수출보조는 수출보조 철폐 시한후 5년간 유지 가능(2021년 철폐)

### 나. 식량원조

-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도입
  -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
  -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 인정
  - 수혜국의 동종 또는 대체 품목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등

**□ 금지 보조금(Prohibition)**

- 어선 및 서비스선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의 제3국 이전
-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연료, 미끼, 인건비, 보험, 어구 등)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 등 기반시설 및 항 인근 가공시설
-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 해면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지원
- 입어료
- IUU(불법, 미보고, 미규제) 어업
- 기타 과도어획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금지 예외(General Exception)**

- 어선(서비스선 포함)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개선
- 특별한 어업기술 어구 및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
-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수산관리제도 이행 비용
- 어업과 관계없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훈련비 및 어선원의 재교육
- 어업관리관련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조기퇴직, 영구 이직 지원
- 다음을 조건으로 하는 감척 사업
  - 완전 파기 또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감척되는 어선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허가, 면허, 쿼타 등) 포기
  - 감척내용이 포함된 어업관리계획 존재(입어제한시스템, 어획쿼타, 어획노력제한 등)

**□ 개도국 특별대우**

- 비기계화 어구사용 연안어업, 가족형어업 또는 10m이하의 어선어업 등

**□ 이행기간 :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